의안번호	2210450
의 뢰 인	정희용의원
회 답 일	2025.8.20.
추계번호	25B28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5호 신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함(제1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종합적인 복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2조제5호 신설 (정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낙후지역에 포함하고, 시·도지사가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종합적인 복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어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동법에 따른 지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사업자에 대한 주요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1]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요 지원현황

재정수반조문	지원내용
조세 및 부담금 감면(제51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54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 •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제5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 • 지역주민 편의증진 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 • 낙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편의 증진 사업 보조금 인상 지원

○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여부, 지역개발사업의 내용 및 지원 규모, 지원항목, 지원비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Ⅳ.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총 11건)

(단위 : 명, 억원)

연도	재난명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피해	피해액	복구비
2021	7.5~8 집중호우	7.22	전남 장흥·해남·강진,진도군(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4	355	1,804
2021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9.6	경북 포항시	1	211	1,050
2022	8.8.~17. 호우	8..22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충남 부여군·청양군	19 (사망 16, 실종 3)	3,154	8,324
		9.1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전체), 강원 홍천군,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2022	제11호 태풍 힌남노	9.7	경북 포항시·경주시	11	2,440	7,802
		9.28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2022	12.21~24. 대설·한파·강풍	1.11	전북 순창군 쌍치면	-	149	52
2023	6.27~7.27 호우	7.19.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세종, 전북 김제시 죽산면	51 (사망 48, 실종 3)	7,513	17,130
		8.14.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전체), 완주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			

연도	재난명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피해	피해액	복구비
			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2023	제6호 태풍 카눈	8.14.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	558	1,106
		8.29	강원 고성군(전체)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2023	농작물 냉해	8.14.	경북 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	1,104	1,273
2024	7.8.~19. 호우	7.15.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5 (사망 4, 실종 1)	3,182	9,239
		7.25.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8.13.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2024	9.19.~21. 호우	10.15.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5 (사망 1)	711	1,137
2024	11.26.~28. 대설·강풍·풍랑	12.18.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 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6 (사망 5, 부상 1)	4,509	1,48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총 7건)

연도	재난명	선포일자	선포지역	피해 및 복구내용
2020	코로나 19	‘20. 3. 15.	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	■ 인명피해(‘20.3.15. 기준): – 대구 6,031명, 경산 521명, 청도 141명, 봉화 60명 ■ 복구지원금: 4,000억원 (대구 3,000, 경북 1,000)
2022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22. 3. 6.	울진, 삼척	■ 이재민: 408가구 587명 ■ 재산: 2,261억원(공공 1,948, 사유 313) –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막 95개소, 양봉 63농가, 산림 20,523ha 등 ■ 복구지원액: 4,170억원(공공 3,984, 사유 186)
		‘22. 3. 8.	강릉, 동해	
2022	이태원 사고	‘22. 10. 30.	서울 용산구	■ 인명피해(‘23.3.31. 기준): 사망 159명, 부상 330명 ■ 복구지원금: 61억원 (서울 34, 경기 16, 그 외 지역 11)
2023	‘23년 4월 산불	‘23. 4. 5.	대전 서구, 옥천, 홍성, 당진, 금산,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 인명피해: 사망 1명, 부상 34명(중상1, 경상33) ■ 이재민: 339가구 667명 ■ 재산: 684억원(공공 374, 사유 310) – 주택 268동, 농기계 1,107대, 농·축산·임업시설 291건, 산림 3,723ha 등 ■ 복구지원액: 808억원(공공 663, 사유 145)
		‘23. 4. 12.	강릉	
2024	12.29. 여객기 참사	‘24.12.29.	전남 무안군	■ 인명피해: 사망 179명, 부상 2명 ■ 복구지원액: 50.4억원
2025	3.6. 전투기 오폭 사고	‘25. 3. 8.	경기 포천시 이동면	■ 재산피해: 건축물 210건, 농기계 49건, 차량 25대, 농업·축산시설 50건 등 ※ ‘25.3. ndms 접수 기준
2025	경북·경남·울산 산불	‘25.3.22.	경남 산청	■ 인명피해: 183명(사망27, 부상 156) ※ 공무원 1, 진화대원 3 미포함
		‘25.3.24.	울산 울주, 경북 의성, 경남 하동	■ 재산피해: 1조 818억원(공공 5,643, 사유 5,175) – 주택 3,848동, 농·수산시설 6,106건, 농·산림작물 3,419ha 등
		‘25.3.27.	경북 안동,청송,영양, 영덕	■ 복구지원액: 1조 8,809억원 (공공 1조 3,855억, 사유 4,954억)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